

18世紀의 貨幣流通 研究

權 仁 赫

〈目 次〉

- | | |
|------------------|---------------------|
| I. 序 言 | IV. 貨幣 流通上에 나타난 諸現象 |
| II. 貨幣 流通圈의 擴大 | 1. 錢賤現象 |
| III. 金納化의 背景과 展開 | 2. 錢貴現象 |
| 1. 金納化의 背景 | V. 結 語 |
| 2. 金納化의 展開 | |

I. 序 言

18세기는 舊來의 傳統的 秩序가 動搖되고 새로운 움직임이 發芽되던 시기였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農業經營樣式과 土地所有關係의 變化, 상업계에서의 市塵商人과 私商人의 都買活動, 그리고 수공업 분야에서의 先貨制現象 등은 구질서의 解體를 主導하였고 아울러 自生的인 近代資本主義에로의 能力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18세기의 個別的인 現象들은 貨幣라는 媒體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樣狀을 띄었고 상호 긴밀한 紐帶關係를 맺어 商品流通經濟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18세기의 貨幣流通 研究는 조선 후기의 社會·經濟上의 變質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연구 진척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금일까지의 既述된 화폐관계 論著들을 接해 보면 대체로 通史的이고 制度史的인 면이 지나치게 강조¹⁾되어 본 문제의 核心에서 벗어난 감이 있다. 말하자면 화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把握하였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變質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多幸스럽게도 元裕漢教授와 宋贊植教授의 勞作²⁾에 의해 다소나마 그 片鱗을 窺知

1) 柳子厚, 1940. 《朝鮮貨幣考》(서울:學藝社)
高承濟, 1954. 〈韓國貨幣流通史序說〉《서울大論文集》1.
崔虎鎮, 1974. 《韓國貨幣小史》(서울:瑞文堂)
2) 元裕漢, 1975. 《朝鮮後期貨幣史研究》(서울:韓國研究院)
宋贊植, 1975. 《李朝의 貨幣》(서울:한국일보사)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上記業績들도 화폐유통에 관한 全的인 論究가 아니라 화폐자체의 연구로 끝났기 때문에 前者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화폐유통의 實體를 解明키 위한 前哨作業으로서 화폐가 持續的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18세기를 연구 대상으로 設定하고 이 기간에 전개된 화폐 유통권의 확대과정과 배경, 金納化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화폐유통상에 나타난 錢賤·錢貴現象을 抽出, 究明해 봄으로써 18세기의 화폐유통에 관한 一端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II. 貨幣流通圈의 擴大

肅宗 4年(1678) 화폐가 鑄造, 流通되기 이전에 開城과 인근지방에서는 이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래 개성은 高麗王朝의 首都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諸般 文物制度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成宗 때(996) 鐵錢이 鑄造·行用된 이후 각종 화폐의 유통이 試圖된 곳이기도 했다.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개성은 商業都市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국내의 餘他 地方보다 가장 먼저 화폐가 유통될 가능성이 많았다. 실제 개성에서는 銅·鐵이 地銅形態로서 通貨機能을 발휘하고 있었고³⁾ 이에 자극을 받은 많은 政策 擔當者들은 開城에서부터 화폐유통을 시작하여 全國에 점차 확대시키고자 하였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努力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단되고 개성을 중심으로 한 隣近地方에서만 화폐가 通用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松都則用錢已久 至於傍近之邑 皆得用之 而人爲便 豈有獨便於松都 而不便於他處乎 毋勗浮議 持久行之 則不出數年 庶可通行於國中矣⁵⁾

라고 한 바 처럼 肅宗 4年(1678)에 이르면 他地域에의 유통 가능성을 提起하여 持續的인 화폐 사용만이 화폐의 전국적인 통용을 可能케 한다는 信念을 낳았고, 이것은 곧 貨幣 鑄造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때에 주조된 화폐는 京中에 무난히 유통될 수는 있었지만 地方에 까지 擴大, 通用시킬만큼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左參贊吳挺緯所啓 錢文今已行之 民皆樂用 似無難行之慮 而所鑄不多 不得廣行 八道監兵營 亦問其便否 鑄造行用之意 問于大臣處之何如 領議政許曰 他道則先問其便否 平安道則最便於行用 全州 人物繁盛 商賈通行 亦可易行矣 上曰 平安監兵營 皆

3) 元裕漢, 1975. 《同上書》 19~20.

4) 同上

5) 《備邊司謄錄》 34, 肅宗 4年 1月 24日條.

令鑄之可也⁶⁾

라고 하여 지방 監·兵營에게 화폐사용의 가능성을 묻고 中央에서 鑄造·通用의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평안도와全州는 人物 繁盛과 商賈 通行이 활발하다 하여 그 곳 監·兵營으로 하여금 화폐를 鑄造토록 하였다.

한편 화폐 통용에 대한 국가의 公信力을 賦與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信賴度를 높이고 公·私間의 貨幣出入을 더욱 늘리고자 三司(刑曹, 司憲府, 漢城府)의 贖木 外에 賑恤廳 還上 일부를 錢納토록 하였다.⁷⁾ 이같은 金納化의 門戶는 肅宗 5年(1679)에 이르러서 더욱 개방되었으니

今若通行外方 而民役中收米則依當初所定 不可許令代奉錢文 而大同木綿及各司奴婢身貢騎步價布 則當以錢文代奉 而或折半 而或盡數奉之之事 從當磨鍊以啓矣⁸⁾

라고 한 바 처럼 民役 중에서 米로 수납하는 것은 錢文代奉을 禁하고 大同木과各司의 奴婢身貢·騎步價布에 한하여 納稅額의 折半 또는 全部를 화폐로 代奉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의 錢納與否는 邑성의 願에 따라 시행하고 화폐가 없어 錢納을 못하는 자는 上京하여 求得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⁹⁾

한편 화폐의 유통확대를 위해 行錢差人을 각도에 派送하였는데 이들은 買賣之際에 있어 소량의 화폐를 지불하고 많은 이익을 보고자 하는 牟利輩 行動을 恣行했기 때문에 地方과 京中 間의 화폐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軍匠役布·奴婢貢木을 錢文으로 代納코자 하여도 지방에서의 一匹價가 京司에 稅納할 一匹價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地方에서의 화폐유통은 不盡함을 면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兩南地方에 화폐가 普及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적인 매매에 화폐가 行用되지 못했던 것이다.¹⁰⁾

그래서 국가에서는 行錢差人의 弊端을 제거하고자 肅宗 9年(1683)에

今宜革罷兩南所送差人 而令本道監司守令 專幹行錢 錢價高低 一如京市 俾無內外異同 則其流行鄉村及上納京司 必無窒礙難處之弊矣¹¹⁾

6) 《同上書》34, 肅宗 4年 6月 4日條.

7) 《同上書》34, 肅宗 4年 閏3月 24日條, 應行節目.

一. 只捧三司贖木 則公私出入之路 殊涉不廣 賑恤廳還上收捧時 以錢文依定式量宜代奉爲白齊.

8) 《備邊司謄錄》35, 肅宗 5年 4月 9日條.

9) 同上

左議政權曰 今可以通行於京外 而但其中不願行者 則不必強令行之 只令願用者用之宜當 而如或有無錢而不能行者 則許令上京買去似好 以此爲先付諸道何如 上曰 依爲之.

10) 《同上書》37, 肅宗 9年 1月 15日條, 領敎寧府事 閔維重所啓

所謂差人者 皆是常漢牟利之輩 凡於買賣之際 必欲小出錢而多得利 以此外方錢價 與京中市直 多少懸絕 如上納軍匠役布·奴婢貢木 雖欲以錢代納 以鄉村一疋價所買之錢 不能準備京司所納一疋之價 軍民輩以布作錢而上納者 必致狼狽而歸 故兩南行錢 已至數年 實無買賣行用之事.

11) 同上

라고 하여 兩南地方에 派送된 行錢差人制를 革罷하고 本道の 監司·守令이 行錢에 관한 全적인 責任을 지도록 했으며 錢價가 京市와 같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鄉村까지의 貨幣流通과 京司에의 稅納을 圓滑하게 하였다.

同 12年(1686)에는 평안도의 寧邊城 新築資金과 軍餉米 買入에 필요한 財源을 마련코자 安州에서 화폐 주조를 하게 되었는데¹²⁾ 이것은 바로 화폐유통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極甚한 凶作으로 因하여

嶺東田稅 大同例爲作布 而或以穀物 或以魚物 換得布木於嶺西之際 身費常多矣 嶺西之木花生麻 又未免不實 措備尤難 皆願以錢文折定代納 國家似無所損 而民之蒙惠則甚¹³⁾

이라 한 바와 같이 田稅의 錢文代納을 願하게 되었다. 즉 嶺東의 田稅는 大同의 例와 같이 作布 혹은 穀物·魚物로서 稅納하는데 布木의 경우에는 嶺西地方에서 換得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항상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올해에는 嶺西地方의 木花·生麻가 不實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마련하기가 더욱 난처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錢文으로 折定代納하면 국가에 損失되는 바 없고 백성에게는 은혜끼치는 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事實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화폐가 이미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肅宗 13年(1687)에는 전국적인 木花 凶作으로 이에 대한 對策論議가 활발히 展開되었는데 이때 右議政 李端夏는

臣意則今年之軍民徭役 除不得不以布捧納者外 如奴婢身貢諸般納布之類 以錢代捧 則在國家無甚所損 而民可蒙實惠矣¹⁴⁾

라 하여 금년 軍民徭役 중 반드시 布로 捧納해야 되는 것은 除外하고 奴婢身貢과 같은 諸般 納布之類는 錢文으로 代捧하자고 하였다. 이에 領議政 南九萬은 兩南地方은 그 災荒이 全失에 이르지 않았고 또 貨幣가 널리 流通되지 않았으니 木花가 全失에 가까운 凶作·강원·황해 삼도에 한해서 부득불 木으로 上納해야 될 布保 등은 제외하고 그 외 각종 身布만 화폐로 代捧하자고 하였다.¹⁵⁾ 이에 대해 兵曹判書 李師命은

雖使以錢代納 而公洪一道 錢文有未及流行處 不無難處之慮矣¹⁶⁾

12) 《同上書》37, 肅宗 12年 1月 24日條

13) 《同上書》40, 肅宗 12年 12月 15日條

14) 《同上書》41, 肅宗 13年 10月 16日條

15) 同上

兩南則木花 猶不至於全失 錢貨亦且時未流行 而公洪道以上 則木花之無實同然云 公洪·江襄·黃海三道 除砲保等不得以本木上納者外 凡于身布 皆以錢代捧似可矣

16) 同上

라 하여 비록 錢文으로 代納코자 하여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는 貨幣가 아직 流通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劃一的인 錢納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여러 意見의 提示와 討論이 展開된 끝에 충청·황해·강원 삼도에 한해서 부득불 棼木해야 될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것은 木·錢·米 중에서 自願上納토록 하였다.¹⁷⁾

이러한 全國의인 木凶에 대한 對策樹立 過程에서 兩南地方과 忠淸道 일부 지역에서는 화폐가 아직 流通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肅宗 17年(1691) 吏曹參判 李玄逸 所啓에 依하면

目今嶺南 尙州醴泉等地 則已行錢 而大丘亦爲貯錢云 朝家雖無移錢之事 一有行錢之令 則商賈往來買賣 必有錢貨流通之利¹⁸⁾

라 하여 嶺南地方의 尙州·醴泉 등지에서는 이미 行錢되고 있는데 비하여 大丘는 貯錢을 하고 있어 行錢之令이 있거만 하면 商賈가 往來·買賣하여 반드시 貨幣가 유통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積極的인 行錢策으로서 大同·田稅의 綿布徵捧을 錢文으로 代納하면 그와같은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아울러 提示하고 있다.¹⁹⁾

이처럼 화폐의 流通은 사람의 往來와 物資의 疏通이 원활한 곳은 국가의 積極的인 流通獎勵가 없다 하더라도 활발히 進行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強權的인 金納化를 통해서만 보다 넓은 貨幣 流通圈을 設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평안도는 肅宗 21年(1695)에 극심한 災荒으로 인해서 戶曹의 奴婢身貢을 錢納토록 하였는데

平安道龍川鐵山宣川郭山四邑 奴婢身貢 自本營以錢先納之後 明秋追捧 留備營需 而貢木一匹之代 錢文一兩八錢 以爲大重 量減錢數事 令該司稟處事 命下矣²⁰⁾

과 같이 龍川·鐵山·宣川·郭山 四邑의 奴婢身貢은 地方官衙에서 화폐로 先納하고 明秋에 追捧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아의 財政을 補充하기 위해 兩南과 關西地方의 鑄錢을 허락하고 嶺東과 北關地方에는 화폐를 支給해 주도록 했으며 湖西·海西 兩道는 賑恤廳에서 주전한 錢文 1만량을 각각 주도록 하였는데²¹⁾ 이는 화폐 유통권의 확대와 持續的인 貨幣使用에 重要的

17) 同上

南(九萬)曰 公洪道錢貨 設或有未及通行之處 一道之內 何可區而別之乎(中略) 或本木或錢或米中 使之從自願上納 似爲便營矣 上曰除不得不棼木者外 許其代棼事 以此所審 分付於公洪·黃海·江襄三道可也

18) 《同上書》45, 肅宗 17年 11月 14日條

19) 同上, 吏曹參判 李玄逸所啓

大同, 田稅綿布之徵捧 使之以錢代納 則庶幾蒙利矣

20) 《同上書》49, 肅宗 21年 12月 13日條

21) 《同上書》49, 肅宗 21年 11月 21日, 領議政南(九萬)所啓

湖西·海西兩道 既不可與兩南·關西一體許鑄 又不得與嶺東·北關一體給錢 則殊非朝家均惠之道 此兩道 亦自賑應鑄錢 各給一萬兩 以爲移充民役之地 似不可已矣(中略) 上曰 依爲之

意味를 지닌다.

肅宗 29年(1703) 황해도에서는 各邑의 田稅와 軍門保米를 作錢하여 勅使 變應費로 取用케 하고 후에 選償토록 하였는데²²⁾ 이는 農事 凶作에 따라 移轉穀의 徵捧上納이 곤란해져서 從願錢納하자는 사실²³⁾과 같이 황해도내의 貨幣流通없이는 전혀 舉論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木凶으로 인해 田稅木·大同木·軍兵身布를 錢文으로 代捧케 하였는데

各邑田稅木·大同木·軍兵身布甚多 而市上木布絕貴 無以徵納(中略) 若或以錢代納則國家無所損 而可除一道呼冤之弊 統·兵·水營·各鎮·浦 防軍身布 爲先以錢代捧事一邊分付而馳啓云 比則朝家 業已許以折錢收捧 又無回啓之事矣 上曰 然矣²⁴⁾

라 하여 市上의 木·布가 絶貴해짐에 따라 錢文代納을 통해서 國家의 損失을 막고 納稅者의 呼冤之弊를 除去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統·兵·水營과 各鎮·浦의 防軍身布를 화폐로 收納케 하였다. 이 사실은 황해도의 경우와 같이 道內의 화폐유통을 前提로 한 것이고 積極的인 意味에서는 화폐의 強權的인 侵透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평안도 江界地域은 人蔘이 많이 產出되는 까닭에 每春·秋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入山採取케 하여 貢賦에 充當하고²⁵⁾ 그리고 每戶당 약간의 錢文을 稅로 收取했다는 記錄²⁶⁾을 볼 적에 肅宗 33年(1707)頃에는 西北地方 江界地域까지 이미 화폐가 流通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今則行錢已三十年矣 流行遍於遠方 數年之前 錢賤如土 治人或鎔錢成器 以致今日之貴云²⁷⁾

이라 한 바처럼 肅宗 42年(1716)頃에는 韓半島 거의 전지역이 貨幣流通圈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와같은 사실은

即今錢貨之絶貴 亦無異於木綿之難辦 盖錢貨之造已久 窮海深峽莫不通用 以此之故 場市間錢貨絶稀傷農病民 莫甚於此²⁸⁾

22) 《同上書》53, 肅宗 29年 5月21日, 右議政 申琯所啓

田稅及軍門保米作錢 使之取用 勅使後推移選償似宜矣 上曰 依爲之

23) 《同上書》53, 肅宗 29年 9月3日, 行吏曹判書 李滸所啓

今年本道農事 又未免凶歉 則移轉穀徵捧上納 其勢誠難 而其中山郡尤甚 海邊則稍勝云 民情或不無慮其日後之弊 欲爲作錢以納者 則從願施行 亦無不可

24) 《同上書》53, 肅宗 29年 10月17日, 領議政 申琯所啓

25) 李重煥, 〈八道總論〉《擇里志》

26) 《備邊司謄錄》58, 肅宗 33年 3月2日, 右議政 李頤命所啓

故每歲蔘節 稱以拾椽 仍採人蔘 本府收 稅每戶若干錢

27) 《肅宗實錄》60, 肅宗 42年 10月癸丑, 右議政 李頤命所啓

28) 《備邊司謄錄》58, 肅宗 43年 9月2日, 領議政 金(昌集)所啓

라 하여 窮海深峽까지 화폐가 流通되고 있다는 記述에서도 如實히 나타난다. 景宗 4年(1724)의 記錄을 보면 西北地方의 窮荒之地로 부터 東南地方의 濱海之處에 이르기까지 貨幣가 모든 交易에 미치는 絶對的인 地位가 나타나 있는데²⁹⁾ 이 事實은 화폐사용의 普遍化를 뜻한다 하겠다.

英祖 3年(1927)에 鑄錢에 관한 論議가 활발히 展開될 적에 行司直 張鵬翼은

小臣年前北謫時 錢貨只用於吉州境矣 二周年後 蒙放出來時 則亦行於會寧以南 錢貨之稀貴 盖由於當初不用處 通行之故也³⁰⁾

라고 하여 그가 辛壬土禍(1723)의 禍를 입어 북쪽지방 鍾城에 流配될 적에는 貨幣가 단지 吉州附近에 까지만 通用되었는데 2年後 풀려 나올 적에는 會寧以南까지 화폐가 北上 流通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英祖 7年(1731)에

江邊素無用錢之事 賦於民者 只是米布兩物而已 近年以來 錢貨通行 無處不到 邊地用錢 所當嚴禁³¹⁾

이라 하여 邊境地方에는 본래 用錢之事가 없고 백성들에 賦課하는 것은 단지 米·布와 같은 現物 뿐인데 근래에 와서 貨幣가 江邊 到處에 流通되고 있으니 이를 당연히 嚴禁해야 한다는 陳述 내용은 화폐의 普及·流通이라는 側面에서 실시된 金納化가 그 所期의 目的을 성취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邊境地方에서의 貨幣流通은 당시 錢貴現象으로 苦心하는 爲政者들을 또 한번 驚愕케 하여 함경도의 六鎭과 평안도의 江邊地域에 대한 行錢禁止의 命을 내리게 하였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도의 端川 以北과 평안도의 江邊 各邑에서는 貨幣가 계속 流通되었다. 그래서 朝廷에서는 道臣으로 하여금 違法 行錢의 罪가 莫重함을 특별히 曉諭케 하고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錢文을 官衙에 納入하면 그 市直에 따라 穀物을 주도록 하였다.³³⁾ 이같은 方案은 흉년에 대한 救民之策으로서 또 禁行錢策으로서 즉시 施行되었으며 당시의 錢貴現象을 克服하는 消極的 方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又所啓 此平安監司李周鎭狀啓也 以爲渭原郡守李鎭嵩 匠人巫女所納之稅 以錢督捧

29) 《同上書》75, 景宗 4年 1月14日, 戶曹判書 金演所啓

我國行錢 甚來已久 當初則只行於京中與近道 故足以通行 今則如西北窮荒之地 東南濱海之處 貿遷交易 莫不以錢通行 錢貨之設局鑄成 今幾五十年 八路通行

30) 《同上書》81, 英祖 3年 5月 11日條

31) 《同上書》90, 英祖 7年 6月 7日, 文郎廳 李宗城所啓

32) 同上

33) 《同上書》102, 英祖 13年 9月 26日, 右議政 宋寅明所啓

北關之端川以北 西路之江邊各邑 使不得行錢法禁至嚴 盖出於謀國之長慮 近來江邊 莫不行錢(中略) 今年江邊失稔 民必難食 今若令道臣 先以違法行錢罪重 當禁之意 別爲曉諭後 使之各納其所有錢 從市直受穀

於九十月之約 不但民怨之載路 民間禁錢 此解弛閭里酒幕 依舊行用云³⁴⁾

이라 한 바처럼 지방 守令들이 各種 稅金을 貨幣로 督捧하는 違法行爲를 恣行함에 따라 民間의 行錢 禁止試圖는 實效를 거둘 수 없게 되고 閭里酒幕에서는 옛처럼 貨幣가 流通되게 되었다. 또한

今者鑄錢 實爲爲民 而今聞其無效云 此不過不及於小民 滲漏於商賈之致(中略) 況 利於商賈之際 轉流於邊邑 其涉可悶³⁵⁾

이라고 하여 백성을 위한 貨幣鑄造가 商賈를 위한 것으로 變轉되어 이들의 利益追求 活動에 依한 邊境地方에의 貨幣流入 現象이 招來되었다. 그리고 稅納上의 矛盾, 即 北關地方의 魚民들은 船塩盆稅를 純布로 備納해야되기 때문에 그들이 採取한 魚鹽을 他地域에서 交換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錢文은 얻기 쉬워도 막상 稅納해야 할 純布는 구하기 어려웠고 錢文을 求得했다 해도 中間에서 點退·情債의 弊害가 있었기 때문에 魚民 모두가 錢文代捧을 원해야만 하는 사실³⁶⁾이 發生하였다. 환언하자면 貨幣流通과 密接한 관련이 있는 錢納을 採擇하지 않음으로써 當 地域의 行錢을 막아 보자는 意圖는 時代錯誤的인 발상이었고 그 實效性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비록 稅納上에서는 強制的인 現物收納이 成立되었다 하더라도 流通界에서의 貨幣地位는 점차 上昇되어 갔다.

화폐가 全國 到處에 擴散·通用됨에 따라 모든 商去來는 貨幣를 唯一의 媒介手段으로 삼게 되었고 백성들의 生命이라 할 수 있는 土地도 貨幣에 의해 去來되게 되었다. 이같은 事實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나온 《고문서 해제 I》의 〈土地文記〉 卷³⁷⁾을 살펴보면 더욱 確實해 진다. 본 〈土地文記〉 卷에서 貨幣流通과 관련된 사실들을 抽出해 圖表로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분 류	총 기 간	총 문 기 수	순전거래문기수	순 전 거 래 年當문기수
시 기				
숙종 5년(1679)~45년(1719)	41	201	179	5
경종 1년(1721)~3년(1723)	3	21	21	7
영조 1년(1725)~51년(1775)	51	565	565	11
정조 1년(1777)~23년(1799)	23	290	290	13

34) 《同上書》 109, 英祖 17年 12月 26日條

35) 《同上書》 123, 英祖 27年 8月 17日條

36) 《同上書》 124, 英祖 28年 9月 5日, 北評事 南泰會所啓

北關海民 屬均役廳之後 均役廳以北關之不用錢貨 缸塩盆 令以純布備納 此雖出於爲北民之意 而又爲北民難堪之弊 海尺採魚鹽 轉貨於輪源·元山 故得錢易得布難 而且布則上納之際 不無點退處細 徵索情債之弊 而錢則無此弊 沿路海民皆願 以錢備納

37) 국립중앙도서관, 1972. 〈土地文記〉 《고문서해제》

우선 上記 圖表에 관한 說明을 한다면 左端에는 本 論文의 設定期間인 肅宗 時부터 正祖 代까지를 各 王別로 區分했고 上端에는 總期間과 總文記數, 純錢去來文記數 그리고 純錢去來의 年當 文記數를 表示했다. 不充分한 分析이지만 上記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肅宗 4年(1678)以後 鑄造·流通되기 시작한 貨幣가 景宗 代부터는 모든 土地去來(비록 限定된 資料이지만)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傳統的 去來手段(木·布·馬·牛·正租·米·銀等)을 물리치고 獨占的 地位를 確保했다는 사실, 그리고 後代로 내려 올수록 土地買賣가 보다 빈번히 行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貨幣는 土地買賣를 포함한 모든 去來에 있어서 自然經濟 下의 代表的 去來手段이었던 米·木을 대신하여 絕對的인 地位를 占有하게 되었다.³⁸⁾ 이와같은 사정은

民之用錢既久 則目熟手慣 不識他幣(中略) 凡所質遷 非錢莫可³⁹⁾

라고 한 바와 같이 錢文 外의 他幣 存在를 모를 정도로 만들었다.

Ⅱ. 金納化의 背景과 展開

1. 金納化의 背景

肅宗 4年(1678) 前에 行해진 金納化의 措置로서 田稅의 折半을 錢文으로 代捧코자 했던 試圖는 貨幣가 아직 널리 流通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實現性이 稀薄했을 뿐만 아니라 京中서의 防納 弊端이 발생되어 도리어 民怨을 誘發시켰다.⁴⁰⁾ 그래서 이와같은 過去의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領議政 許積은 漸次的인 貨幣流通을 摸索하는 過程에서

今則先於三司收贖 及推考贖木 以錢捧之 以爲漸次通用之地⁴¹⁾

라고 하여 우선 三司(刑曹·司憲府·漢城府)에서 받아들이는 贖木·推考贖木을 화폐로 收捧함으로써 漸進的인 貨幣流通을 꾀하자는 具體的인 提案을 하게 되었다. 이 提案은 즉시 採擇·補完되어서 刑曹·司憲府·漢城府 그리고 義禁府의 各種 贖木과 贖植廳의 還上을 錢文으로 收捧하도록 하였다.⁴²⁾ 그러나 同 4年(1678)에 鑄造된 貨幣는 주로 京中의 民間 商去來에서만 行用되었고 또 金納化의 範圍도 매우 狹小하였기 때문에 永續的인 貨幣流通에 疑懼心이 提起되었

38) 《備邊司謄錄》98, 英祖 11年 12月 13日條

39) 朴趾源, 〈賀金右相履素書〉《燕巖集》

40) 《備邊司謄錄》34, 肅宗 4年, 1月 24日, 領議政 許積所啓

前者議行錢時 田稅一半以錢代捧 則鄉曲之民 猝難得錢 不得不防納於京中 故致有民怨 未免中止

41) 同上

42) 《同上書》34, 肅宗 4年 閏3月 24日條

다. 이에 따라

自今以後 兵·戶曹·漢城府各衙門所收 皆以錢文捧上 而或有願納銀布者 亦爲許捧事 捧承傳施行何如 金錫胄曰 定價之際 必有掣肘之患 一匹之價 姑以五錢定式 代捧則民必便之矣 上曰 以木以錢 從自願捧之⁴³⁾

라고 하여 兵曹·戶曹·漢城府 등 各 官衙에서 收納하는 모든 稅金은 木·錢 中 民願에 따라 收捧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從願收納의 原則은 肅宗 5年(1679) 京外의 貨幣流通을 論하는 자리에서 보다 多樣하게 具體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⁴⁴⁾ 즉

一. 兵曹의 步兵 등 二匹을 稅納하는 者는 元數 內의 半을 錢文으로 備納하고 忠贊(衛) 등 一匹을 稅納하는 者는 願에 따라 本木 或은 錢文으로 備納한다.

一. 工曹·繕工監·尙衣院·軍器寺·校書館의 唱准匠人 등과 各 衙門의 諸員으로 二匹을 應納하는 者는 元數 中 半을 錢文으로 備納한다.

一. 議政府의 書吏, 吏曹·留曹의 書吏로 二匹을 稅納하는 者는 모두 錢文으로 備納한다.

一. 戶曹에 屬한 寺奴婢, 宗親府·議政府 등 諸 上司, 各 衙門에 直貢하는 奴婢貢木으로 二匹·一匹半·一匹을 稅納하는 者는 모두 錢文으로 備納한다.

一. 內需司 奴婢貢木으로 一匹半을 稅納하는 者는 本木 或은 錢文의 備納 與否를 內司에서 參酌 稟處한다.

一. 內侍·宦官의 保卒로 二匹을 稅納하는 者, 掌樂院의 樂工·樂生 등 保는 本木 或은 錢文으로 願에 따라 備納하되 內侍府의 奴婢貢木은 各 司의 例에 따라 施行한다.

一. 兩界의 寺奴婢·內司奴婢의 貢紬布를 土產으로 備納하는 것은 學論치 않는다.

一. 各種 綿布의 錢價를 만약 定式化하여 영구히 遵行한다면 隨時의 高下之事가 없고 或은 窒碍·難行의 폐단이 있으니 그 해의 豐凶과 木綿의 貴賤을 觀望하여 臨時로 加減한다.

一. 未盡한 條件들은 차차 磨鍊한다.

그러나 貨幣流通을 목적으로 實施한 金納化는 그 初期부터 順坦치 않았다. 말하자면

今若盡爲代捧錢文 則本曹經用之米 將無以支繼 三南山郡奴婢貢木 則以錢代捧 沿海各邑 依前作米 以爲需用之地何如 上曰 依爲之⁴⁵⁾

라 하여 米의 必要性에 따라 三南地方의 山郡 奴婢貢木을 錢文으로 沿海 各邑의 奴婢貢木은 米로 收納한 사실, 그리고 황해도의 奴婢貢紬를 평안도의 例처럼 繼續 現物로 받아들인 內容⁴⁶⁾ 또한

43) 《同上書》35, 肅宗 5年 2月 20日, 左參贊 吳挺紳所啓

44) 《同上書》35, 肅宗 5年 4月 9日條

45) 《同上書》35, 肅宗 5年 5月 23日, 同知事 陸來善所啓

46) 同上

第念都民之困苦 近來特甚 春夏間受食賑恤廳還上 至於累度 今當收捧 而都民異於外方農民 必以銀錢 質得米穀於外方而後 可以備納 其實納之際 豈無虛費之歟 臣意則畿甸移轉 則固當以本色還捧 而都民則特以銀錢代捧 別無所損於公家矣⁴⁷⁾

라고 하여 都民들이 賑恤廳 還上을 收納할 때 外方에서 米穀을 質得·備納하는 過程에서 낭비가 많이 發生하니 都民들에게는 特히 銀·錢 代捧을 허락하자는 사실, 바로 이것은 肅宗 4年(1678) 貨幣流通을 爲해 마련한 賑恤廳 還上의 錢文代捧을 死文化시킨 것으로서 화폐유통을 目的으로 한 金納化가 當初 意圖대로 進行되지 못함을 意味한다 하겠다. 보다 效果的인 金納化는 現物收捧이 어려운 凶年을 맞이 해 成立하는데

今年木花之不實 八路同然(中略) 今年之軍民徭役 除不得不以布捧納者外 如奴婢身貢諸般納布之類 以錢代捧 則在國家無甚所損 而民可蒙實惠矣⁴⁸⁾

라 한 바와 같이 木花의 전국적인 凶作에 따라 軍民徭役 중 반드시 布納해야 할 것은 제외하고 그의 奴婢身貢 등 諸般 納布之類를 錢文으로 代捧하여 국가에 損失되는 바 없고 백성에 實際的 惠澤을 베풀자는 생각에서 凶年 時마다 舉論·施行되었다. 따라서 金納化는 凶年을 당하여 現物收納의 代捧이란 形態로 그리고 國家에 損失되는 바 없다는 觀點에서 消極的으로 進行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形態로는 官衙의 時急한 經費調達을 위해 實施되었는데

此黃海監司申鉉狀啓也 以爲本道時當設賑 物力蕩殘之餘 兩勅疊到 各邑萬無支過之路 故曾請京司米布銀錢矣 朝家雖有劃給 日勢急迫 未及運用 各邑田稅及三軍門保米作錢已捧 未上納之數 先爲取用於勅需 從後拮据(中略) 上曰 依爲之⁴⁹⁾

라고 하여 設賑으로 인한 地方 官衙의 物力 蕩殘으로 使臣 來到에 따른 必要 經費가 不足해져자 各邑의 田稅·三軍門 保米를 作錢 收捧하고 있다. 後述하겠지만 田稅는 國家의 惟正之供이라 하여 錢納이 쉽게 許諾되지 않은 部門이다.

그리고 豐凶에 관계없이 稅納物의 運送 不便으로 錢納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해도와 長山以北 地方과 山郡四邑 그리고 경상도의 嶺底七邑⁵⁰⁾이 이에 屬한다. 다음은 現物收捧에 따른 諸弊端을 막기 위해 實施되었는데

北關海民 入屬均役廳之後 均役廳 以北關之不用錢 貨缸塩盆 令以純布備納 此雖

47) 《同上書》37, 肅宗 9年 8月 11日條

48) 《同上書》41, 肅宗 13年 10月 16日, 右議政 李(端夏)所啓

49) 《同上書》53, 肅宗 29年 5月 21日條

50) 《同上書》81, 英祖 3年 閏3月 6日, 特進官 黃龜河所啓

黃海道山四郡田稅 當初設置右水站 使之船運上納矣 遠路轉輸之際 民弊罔有其極 故中間爲此變通
《同上書》124, 英祖 28年 12月 20日條

出於爲北民之意 而又爲北民難堪之弊 海尺採魚蠶 轉貨於德源·元山 故得錢易得布難 而且布則上納之際 不無點退龜網 徵索情債之弊 而錢則無此弊 沿路海民皆願以錢備納 擁馬齊訴 若以錢收捧 則實爲公私兩便之道矣 上曰 令均役廳 從民願收捧⁵¹⁾

이라 하여 北關地方은 本來 作布地域으로서 布를 產出하지 않은 關係로 이것을 求得하기 위한 많은 隘路와 收納上의 諸 弊端이 뒤따랐기 때문에 民願에 따라 錢文備納이 行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多岐한 事情에 依해 실시된 金納化는 國家利益과 便民之政에 附合될 때 더욱 活潑히 展開될 수 있었다.

2. 金納化의 展開

肅宗 初期에 鑄造·流通되기 시작한 貨幣는 여러 事情에 의해 施行된 金納化에 힘입어 보다 廣範하고 積極的인 性格을 띄게 되었다. 金納化는 그 稅納 對象에 따라 多岐한 形態를 取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國家 主要財源이라 할 수 있는 木·布·米의 錢納化 過程만을 살피기로 한다.

既述한 바 처럼 肅宗 初期에는 三司의 贖木·推考贖木 그리고 賑恤廳의 還上에 대해서 처음으로 金納化가 施行되었고 同 5年(1679)에는 보다 具體的인 錢納對象과 方法이 舉論·採擇되었다. 즉 各 官衙의 必要에 따라 奴婢貢木 등을 純錢 或은 錢木參半으로 하되 民願에 따라 從願 收納케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貨幣에 對한 認識 不足으로 惹起된 錢價의 低下와 화폐유통이 京中과 그 周邊地域에만 通用되는 現象⁵²⁾으로 인해 金納化의 地方 擴大는 時期尙早였었다.

肅宗 13年(1687)에 發生한 전국 규모의 木凶現象은 木納을 곤란케 하여 木을 대신할 수 있는 稅納物을 강구케 하였다. 이리하여

自朝家不可不一體分付 而但民之情願 各自不同(中略) 或本木·或錢·或米中 使之 從自願上納 似爲便當矣 上曰 除不得不捧木者外 許其代捧事 以此所啓 分付於公洪·黃海·江襄三道可也⁵³⁾

라고 한 바와 같이 必히 木으로 收捧해야 할 것은 除外하고 그 외 모든 納木之類는 木·錢·米 중에서 從願上納케 하였다. 이 때에 錢文收捧은 貨幣의 流通을 前提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同 13年頃에는 충청·황해·강원도 地域에서는 화폐가 널리 流通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肅宗 21年(1695)에는 평안도의 木凶으로 인해 그 곳 諸般 身役을 折錢 上納케 하였는데

51) 《同上書》124, 英祖 28年 9月 5日條

52) 《同上書》35, 肅宗 5年 4月 9日, 行大司憲 吳挺緯所啓

錢文 朝家既已定式 與銀同價 而市民私 自加給錢文 此無他 銀貨貴 鑄錢多 而只用於京中故也

53) 《同上書》41, 肅宗 13年 10月 16日條

頃者尙衣院 論報備局 以爲平安道 失稔尤甚 故諸般身役 皆令本道折錢上納⁵⁴⁾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凶年으로 인한 現物 上納이 어려울 땐 錢文代捧이 빈번하게 행해졌다.

그 후 同 25年(1699)에 이르면 納布之類에 대한 錢布參半이 畿湖·湖南·江原地方에 행해진다. 이는 당시 左議政 徐文重의 啓에 잘 나타나 있는데

各道軍布及身布 初以本木收捧之意定奪矣 秋成後 始知木花不實 且因諸道狀聞 以錢布參半收捧之意 分付矣 (中略) 畿湖·湖南 既許參半收捧 則江原失稔 無異諸道 而獨爲不許 似有不均之歎 江原道亦爲一體 以錢布參半捧納之意 分付何如上 曰 一體分付可也⁵⁵⁾

라 하여 各 道의 軍布·身布를 처음에는 本木으로 收捧하도록 했으나 나중에 木花 不實이 判明되어 畿湖·湖南·江原地方에 錢布參半을 施行토록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肅宗 28年(1702)의 全國의인 災荒으로 인해 <各道新舊還上及諸般身役收捧定式別單>을 마련하여 災害가 極甚한 지역은 錢·布 中 從願上納을 하게 하였다.⁵⁶⁾ 이같이 複雜多岐하게 행해진 錢文代捧은 同 33年(1707)에 이르러 <錢木參半法>으로 確定되었으니

田稅即惟正之供 國家每軫念民困 有還穀蕩減之事 故至有減稅之請 臣則決知其不可矣 至於身布 既有錢木參半之規⁵⁷⁾

라고 한 바처럼 身布代價는 錢木參半法이 施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錢木參半法은 以後 잘 遵守되어 일부 지역의 作況이 不盡하다 해도 그대로 強行된 것 같다.⁵⁸⁾ 이같이 잘 履行된 背景에는

木花雖曰失稔 而京中需用 亦不可不慮 故三南則以錢木參半上納事 分付矣 若以純錢捧納 則京中貢物人 不無呼冤之弊 純錢一款 似不當許之 (中略) 且朝家命令 不可數數變改 木錢參半之令 更爲申明分付矣 (中略) 上曰 作米一款 事勢便好 而亦有難處之端 錢木參半事 依前冬定奪 申節分付可也⁵⁹⁾

라고 하여 京中 需用의 必要와 貢人들을 保護하기 爲해서 그리고 國家 命令의 隨時 變改를 피하기 위한 努力이 介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嚴格히 施行하고자 했던 錢木參半

54) 《同上書》49, 肅宗 21年 11月 15日條

55) 《同上書》50, 肅宗 25年 11月 6日條

56) 《同上書》52, 肅宗 28年 9月 29日條

57) 《同上書》58, 肅宗 33年 10月 12日, 戶曹判書 尹世紀所啓

58) 《同上書》58, 肅宗 33年 11月 15日, 領議政 崔(錫鼎)所啓

海西一道 慘被災荒 山邑尤甚 野邑爲次 諸般身布 併許作錢爲請 而既於諸道 許令錢木參半 則決不可獨許於海西

59) 《同上書》59, 肅宗 34年 1月 19日, 領議政 崔(錫鼎)所啓

法도 肅宗 43年(1717)에 이르러서는

曾前釐正廳節目 以錢布參半 嚴明定式矣 其後錢貴則捧純木 木貴則捧純錢 終不能
膠守初法⁶⁰⁾

이라 한 것처럼 錢貴現象에 따른 純木收捧과 木貴現象에 따른 純錢收捧이 행해지게 됨에 따라
계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더우기 錢貴·木貴 現象이 同時에 發生한 肅宗 46年(1720)에는 田
稅를 제외한 大同·身役代價를 錢·布 中 從願上納케 함으로써 錢木參半法은 形骸化되고 말았
다.⁶¹⁾ 이같은 現象은 貨幣의 供給·流通量의 不足으로 惹起된 錢貴現象이 繼續되는 한 어쩔 수
없는 狀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錢·布 中 從願上納도 英祖 3年(1727)에 이르던 純木만으로 收捧케 했는데 이는 後述
하는 바처럼 錢貴現象을 克服하려는 意圖과 貨幣에 대한 否定的 立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
한 現物 收納은 同5年(1729)에 재차 強調⁶²⁾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狀況에 놓이게 되
었다. 즉

且外方峽邑 不產木花處 木花比錢 反爲翔貴 故守令或有從民情論報 請以錢上納者
(中略) 今後則或錢木參半 或純錢或純木 一從民願 收捧上納之意 更爲分付何如 上
曰 從民願收捧上納可也⁶³⁾

라고 한 바와 같이 外方 峽邑과 木花를 生産하지 않는 地域에서는 木花價가 올라 純木上納이
錢納보다 더 큰 負擔을 強要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稅納上의 矛盾을 打開하고자 錢木參半·純
錢·錢木 中 民願에 따라 從願上納케 하였다.

그런데 便民之政의 意圖에서 實施한 從願上納은

外方各邑 憑藉從民願之令 曾於純錢或木·錢參半之邑 皆以純木上納 納錢者比無
(中略) 似聞外邑戶首·監色輩 以錢收捧於民間 而換木上納者絕比有之 木花不產之邑
則收其過厚之錢 而質納最劣之木者亦多⁶⁴⁾

라고 한 바처럼 地方 官吏 등의 不正이 介在될 素地를 만들었다. 即 外方 各邑에서는 從願上納
을 빙자하여 純錢, 혹은 木·錢 參半이 可能한 地域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純木으로 上納함으로
써 錢文代捧이 전혀 없는 奇現象을 招來케 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外方의 戶首·監色輩들이 백
성에게는 錢文으로 收捧하고 上納 때에는 品質이 低劣한 木으로 함으로써 中間에서 牟利를 追
求하려는 行爲에서 提起된 것이었다.

60) 《同上書》70, 肅宗 43年 9月 2日, 行禮曹判書 閔鎮厚所啓

61) 《同上書》73, 肅宗 46年 4月 2日

今聞外方 以木錢俱貴之故 不能依定式措備 田稅外大同及身役錢布中 從其所願 即捧上納之意 即爲分付
于諸道及各衙門 何如 答曰 依

62) 《同上書》83, 英祖 5年 10月 24日

上曰 當此米賤錢貴之時 身布大同不可以錢收捧 依所違專以米布收捧事 分付各道 道臣處可也

63) 《同上書》88, 英祖 6年 9月 2日, 兵曹判書 金在魯所啓

64) 《同上書》90, 英祖 7年 1月 16日, 宣惠廳啓言

이러한 行爲의 發生은 極甚한 錢貴現象에서 惹起된 것이었기 때문에 貨幣의 供給·流通量 不足現象을 解消한 한다면 그와같은 不等價의 利를 貪하는 牟利行爲는 점차 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貨幣 供給·流通量의 不足現象을 打開하기 위한 方法으로 累次 擧論되어왔던 錢文 鑄造를 英祖 7年(1731)에 斷行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尤甚한 錢貴現象이 다소 解渴됨에 따라

本道綿田 皆爲赤地 各樣上納木 無路備納 兵曹騎步布·禁御保布·各衙門身貢布 竝請依前例從民願 以錢代捧 砲保布·大同木 木半參半者 亦依戊申例 代捧奉爲請矣 此事既許於嶺南 則湖南亦不可異同 一體許施何如 上曰 依爲之⁶⁵⁾

라고 하여 嶺·湖南의 木凶에 따른 納布之類의 上納이 곤란해질 때 兵曹의 騎保布, 禁·御營의 保布, 各衙門의 身貢布를 民願에 따라 錢文代捧으로 하도록 하고 砲保布·大同木의 木錢參木은 英祖 4年(1728)의 例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貨幣 供給·流通量의 不足現象이 다시 擡頭됨에 따라 이와같은 錢文代捧은 難關에 達着하였다. 即 英祖 10年(1734)의 錢貴現象이 全國의 으로 擴大됨에 이르러 大同木과 各種 軍布는 純木上納으로 變改되었고, 그 升數와 尺數는 舊制에 따르도록 하였다.⁶⁶⁾ 이처럼 便民之政에 根據한 純木上納은

當初木變通 其意蓋出於便民 而到今都民之呼冤如此 外方之民 亦皆以爲不便 則便民之策 反歸於貽害也⁶⁷⁾

라고 한 바와 같이 都民들의 怨聲을 招來하였고, 外方民에게도 不便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弊端의 發生은 앞에서도 指摘한 바처럼 貨幣價値의 急騰에 따른 地方 官吏의 牟利行爲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때에 上納되는 品質이 劣惡한 匱木은 貢人 手中으로 들어 감으로 인해 이들은 自然 失利하게 되고 國家에 대한 怨望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英祖 11年(1735)에는

此時此弊不弛 而將何爲之 大同·田稅 依前使之錢木參半上納 外方之中間幻弄者 繩之以貪贓之律 禁錮終身 木產邑 隨所願以木上納 軍布身布 則一從民願爲之事⁶⁸⁾

라 한 바처럼 大同·田稅木은 錢木參半으로 上納토록 하고 外方에서 中間에 牟利行爲를 저지른 者는 貪贓之律로서 禁錮終身に 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木產邑에서는 그 所願에 따라 木으로

65) 《同上書》91, 英祖 8年 9月 30日條

66) 《同上書》96, 英祖 10年 8月 23日, 大司諫 金始炯所啓

大同木及各樣軍布初以三十五尺定式 而今則各衙門皆以準四十尺者擇捧 有違於詳定本意 今雖以純布許捧 升數尺數一依舊制 申明知委

67) 《同上書》98, 英祖 11年 12月 13日, 知中樞府使 申思喆啓言

68) 同上

上納하고 軍布身布는 從願上納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措置가 제대로 施行되기도 전에 各地에서는 木産·民願이라고 하여 그 請報하는 바가 심히 紛紛하였다.⁶⁹⁾ 그리하여 左議政 金在魯는

臣意則毋論木貴木賤 參半之政 最是均平之道 一例使之參半似宜矣 (中略) 上曰 依爲之⁷⁰⁾

라 하여 木의 貴·賤에 관계없이 錢木參半法을 持續적으로 施行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主張하게 되었고, 이 提案은 즉시 採擇되었다.

그러나 貨幣가 全國을 그 流通圈으로 삼고 모든 去來에서의 絶對的 地位를 確保하게 됨에 따라 稅納上에서의 貨幣地位는 漸次 排他的인 힘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貨幣地位의 上昇은 錢文使用의 日常化와 稅納上의 諸弊端을 克服할 수 있는 唯一한 것이기에 더욱 當然視되었는지도 모른다.

軍布之必令以純木上納者 出於軫念貧民之意 而今年木花全失如此 純錢代捧 無損於軍門 有益於疲氓 依狀聞許施何如 上曰 軍門之純錢代捧 別無所損矣 依爲之⁷¹⁾

라고 한 바와 같이 軍布는 반드시 純木으로 上納토록 하였으나 木花의 凶作에 따라 純錢代捧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같은 措置는 軍門에 損失되는 바 없고, 백성에 利로울 것이라는 見解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같은 事例는 以後에도 종종 施行되었고 無妨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⁷²⁾

이처럼 貨幣의 普遍化에 따른 錢文代納의 빈번한 시행은 英祖 26年(1750)의 均役法 施行을 可能케 하였다. 同28年(1752)의 記錄에 依하면 船稅·鹽盆稅를 純布로 上納해야 되는 北關地方에서 現物上納時 발생되는 諸弊端에서 벗어나고자 純錢備納을 請하고 이를 許諾하는 文句가 보이는데⁷³⁾ 이는 前述한 바처럼 錢文 收捧이 國家에 損失되는 바 없다는 사실, 即 貨幣使用의 日常化에 따른 貨幣地位의 上昇에 基盤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均役廳堂上徐有隣·趙時俊以爲 均役之初規出結米 每結收米二斗 定爲令式 而諸道民情便於錢 而不便於米 故結米寢而不行 每結以錢徵捧 至今遵行 京外無弊⁷⁴⁾

69) 《同上書》99, 英祖 12年 12月 24日, (左議政) 金曰 今春各邑 稱以木産 或民願 其所請報 極爲紛紛 惠聽實爲難處

70) 同上

71) 《同上書》107, 英祖 16年 10月 17日, 領議政 金在魯所啓

72) 《同上書》109, 英祖 17年 10月 25日, 領議政 金所啓

軍布之以錢代捧者 當此木貴之時 不可禁遏

73) 《同上書》124, 英祖 28年 9月 5日條

74) 《正祖丙午所懷臚錄》 서울大學校 古典叢書

라 하여 均役法 施行에 따른 結米 收稅에 있어서 錢文上納은 편하나 米納은 不便하다는 諸道 百姓들의 意見에 따라 錢納을 이제까지 進行해 왔는데도 京外에 아무런 弊端이 없었다는 내용, 그리고 綿農의 凶作으로 인해 現物上納이 至極히 어렵게 되자 錢文으로 時價의 倍納을 願하게 되었다는 사실⁷⁵⁾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은 純錢收捧 추세는 正祖 代에 이르러 경상도 尙州地域의 砲保·樂工保·禁御保·工曹保의 純錢折定⁷⁶⁾을 낳게 하였다.

이와같은 身役代價의 金納化 傾向은 大同木·布의 경우에서도 類似하게 進行되었다.

大同·田稅綿布之徵捧 使之以錢代納 則庶幾蒙利矣⁷⁷⁾

라 한 바 처럼 肅宗 初期에는 화폐 유통을 보다 活性化하기 위해 大同·田稅의 綿布 徵稅部門을 錢文으로 收捧하자는 意見이 나오곤 하였다. 그리하여 간간히 作錢하는 事例⁷⁸⁾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身役部門에서 비록 錢木參半이 行해지고 있다 해도 大同木은 그렇치 못했었는데

此則忠清監司許堉狀啓也 本道民力 難於錢木參半 且以大同木作錢爲請 而既不許兩南 則獨許於湖西 勢有所難 依他道例 錢木參半上納 而大同木作錢事 令該廳稟處 (中略) 上曰 並依此爲之 可也⁷⁹⁾

라고 한 바와 같이 충청도에서는 木凶에 따른 身役代價의 錢木參半이 어렵다는 사실과 大同木의 作錢을 要請해 왔을 때 中央에서는 他道の 경우와 같이 身役代價는 錢木參半으로 上納토록 하고 大同木의 錢文收捧은 關係官廳에 稟處토록 하였다. 이와같은 大同木의 金納化不盡現象은 木綿의 凶作에 따른 純木備納이 如意치 못했을 때, 그리고 貨幣가 商去來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커져 갈 때 비로서 打開될 수 있었다.

貨幣가 韓半島 거의 全地域에 流通될 무렵인 肅宗 45年(1719)에 貢人에 支給할 木綿의 缺乏 現象과 木凶에 따른 現物上納이 곤란해 지자

各樣身役 皆令錢布參半 而今年木花極貴 大同則布則三分之一 錢則三分之二 收捧民間 果便則依此爲之似宜矣 令曰 依爲之⁸⁰⁾

75) 《備邊司謄錄》131, 英祖 32年 10月 15日 漢城判尹 閔百祥所啓 湖南之民 本不以綿農爲業 而換用嶺南木花矣 當此綿農荐歉之時 貧殘納布之類 尺布既難自辨 則皆願以代錢倍數備納 民情誠爲矜惻

76) 《同上書》176, 正祖 14年 2月 17日

司啓曰 卽見慶尙道尙州居民金石宗等上言 則以爲本邑有砲保·樂工保·禁御保·工曹保 五名色之役 (中略) 俱以純錢折定矣

77) 《同上書》45, 肅宗 17年 11月 14日條

78) 《同上書》57, 肅宗 32年 10月 12日, 行戶曹判書 趙泰采所啓

嶺南·湖西兩道監司 以山郡大同·田稅作木邑 許令作錢事(中略) 而故相臣閔爲戶曹判書時 以爲大同或有間間作錢之事

79) 《同上書》58, 肅宗 33年 11月 15日條

80) 《同上書》72, 肅宗 45年 12月 22日條

라 하여 大同木에 限하여 布로 1/3, 錢文으로 2/3를 收捧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도 木貴·錢貴現象이 나타날 다음 해에 錢·布 中 從願上納으로 變改되었다.⁸¹⁾

이처럼 稅納上에 있어서 相當한 變化를 招來케 한 錢貴現象은 그 影響力이 國家·國民經濟에 큰 比重을 占有함에 따라 이 現象의 克服을 위한 수 많은 論難이 提起되었다. 이 때 英祖는

方外所納 則以純木輸納 貢物應下 則以錢用之 如此一二年後 自可木貴錢賤矣 公
納純木 非別件事也 除錢亦是除方外之弊也 即今三南大同上來者 勿令作錢可也⁸²⁾

라고 하여 外方에서의 收納은 純木으로, 貢價支拂은 錢文으로 하여 1,2年間 施行하면 木貴錢賤 現象이 나타날 것이라는 展望이었다. 계속해서 그는 國家에서 純木收捧하는 것은 特別 措處가 아니며, 도리어 錢貴現象과 그에 따른 外方에서의 諸般 弊害를 除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 하여 그는 三南地方에서의 大同木은 作錢收捧치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意圖도 제대로 施行될 순 없었다. 即 木花를 產出하지 못하는 外方 峽邑에서는 稅納을 위한 木을 마련하려면 많은 弊端이 뒤따랐기 때문에 다른 方途를 講究치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錢木參半·純錢·純木 중에서 民願에 따라 上納⁸³⁾케 하였다. 그렇지만 錢貴現象을 틈탄 地方 官吏의 牟利行爲 換言하자면 錢價의 急騰으로 惹起된 等價 比率의 混亂을 틈타 中間 差額을 노리는 作弊가 發生되어 外方の 稅納이 純木으로만 上納되는 奇異한 現象이 빚어졌다. 이래서

勿論木貴錢貴之年 木錢參半之法 更勿撓改 以其所捧量宜交下 則京廳用度 庶可免
渴乏之患 各司貢人亦可有支保之道 (中略) 今年大同收租 依前例 木錢參半上送之
意 三南監司處 分付何如 答允⁸⁴⁾

이라고 하여 木貴·錢貴에 拘碍없이 錢木參半法을 持續적으로 遵行하고 收捧한 것을 적절히 交下하면 京廳 用度の 不足現象이 解渴되고 各司 貢人도 支保之道를 누릴 수 있다는 論理로 大同收租를 예전과 같이 錢木參半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錢木參半法은 以後 隨時 變改되기도 했지만 大體적으로 잘 지켜졌다. 더욱기 英祖 12年(1736)에 이르러 關東·三南 山郡地域의 作木收捧이 錢木參半으로 定式化되었다.⁸⁵⁾ 그러나

81) 《同上書》73, 肅宗 46年 4月 2日條

82) 《同上書》81, 英祖 3年 5月 11日條

83) 《同上書》88, 英祖 6年 9月 2日

今後 則或錢木參半或純錢或純木 一從民願收捧上納之意 更爲分付何如 上曰 從民願收捧上納可也

84) 《同上書》90, 英祖 7年 1月 16日條

85) 《萬機要覽》〈財用篇 73. 大同作貢 作木布錢條〉

關東·三南山郡 作木布 木則錢木參半(一疋代錢二兩 布同. 英宗丙辰 因禮曹判書 趙顯命所奏 無論貴賤 錢木參半)

大同木의 錢木參半法은 身役代價의 金納化過程에서 살핀 바와 같이 漸次 純錢代捧의 性向을 띄게 되었다. 卽 英祖 31年(1755)에

湖西昨年木花大段告歎 作木邑大同民間形勢 實無以木辦納之路 各邑以純錢來納之意 報請本廳重臣所奏 乃是有司之臣執法之言也 其言固是矣 而大同雖重 窮民亦不可不恤 在前如此之時 多有純錢代捧之例矣(中略) 何可不許乎(中略) 令曰 依爲之⁸⁶⁾

라 하여 충청지방의 木花가 크게 凶作됨에 따라 大同木을 上納할 方途가 없게 된 각 고을에서는 錢文代捧을 請하게 되었다. 이 때에 大同木의 參半事目이 심히 嚴格하다 해도 窮民을 救恤하는 意圖에서 또 純錢代捧의 前例도 있다고 하여 純錢來納의 請은 곧 許諾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現物上納이 어려울 때마다 매년 錢文代捧이 舉論되었고 곧 施行되었다.⁸⁷⁾

반면 大同布는 大同木처럼 金納化가 活潑치 못했다.

嶺南之居昌·安義·咸陽·山淸·三嘉·陝川湖南之鎮安·長水·茂朱·龍潭等十邑 處於峽中 麻布所產也 昔在顯廟大同變通之初 此十邑大同 則皆以純布上納 而未或有以錢參半矣⁸⁸⁾

라 한 바 처럼 嶺南地方의 居昌·安義·咸陽·山淸·三嘉·陝川 그리고 湖南地方의 鎮安·長水·茂朱·龍潭 등 十邑은 麻布 所產地로서 顯宗 때 改定된 大同法에 따라 모두 純布로 上納하고 錢布參半은 없었다. 그러다가 英祖 27年(1751)에 이르러 이들 地域에 對한 錢布參半法을 施行하게 되는데

向於先大王朝辛未 廟堂之臣謂以麻布一匹直不滿二兩錢 則十邑捧以純布 朝家之所失不少云 而乃以錢布參半 始爲定制 至今遵行⁸⁹⁾

라고 한 것 처럼 純布收納이 國家에 損失되는 바 크다는 理由에서였다. 그 후 正祖 16年(1792)에 이르러 兩南地域의 純布上納을 錢文上納으로 定式化하였다.⁹⁰⁾

이제까지는 國家 必要에 의해 金納化 趨勢가 가장 活潑히 展開되었던 身役代價의 木·布 部門, 大同木·布部門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既述한 바 처럼 金納化 過程에서 多岐한 形態가 登場되고 그것은 서로 隨時 變改되는데 이러한 現象의 發生은 現物(木·布)과 貨幣 間의 等價比率이 混亂해짐에 따라 提起되는 必然的 現象이라 하겠다. 卽 貨幣가 그 領域을 서서히 넓혀

86) 《備邊司謄錄》128, 英祖 31年 5月 2日條

87) 《同上書》132, 英祖 33年 5月 1日條

88) 禹禎圭, 〈嶺湖南布產邑 大同弘舊之議〉《經濟野言》

89) 同上

90) 《萬機要覽》〈財用篇〉3. 大同作眞 作木布錢條
布則 關東純布 兩南代錢(正宗壬子 因道啓布代純錢 定式)

一般 去來에서의 獨步의 地位를 形成하고 稅納上에서의 貨幣 代捧이 可能해 집에 따라 이제까지 獨占의 地位를 謳歌했던 現物은 그 自身이 內包한 여러 矛盾으로 인해 그 地位가 不透明하게 되었다. 그러나 斷續的인 貨幣 鑄造로 惹起된 錢價의 不安定과 自然力에 依한 現物 生産의 不確實은 貨幣와 現物의 等價比率를 擾亂시키고 이어 稅納上의 混亂을 誘發시켰다. 그러므로 收納上의 隨時 變改는 物價와 錢價의 不安定을 意味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物納과 錢納이 未分化된 狀態下에서 나타나는 自然發生的 現象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稅納米의 金納化 過程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稅米에는 여러 種類가 있으나 그 중 大宗을 이루는 것은 田稅米과 大同米이라 하겠다. 田稅米과 大同米은 肅宗 前에 이미 貨幣流通의 普及을 爲해 擧論되었고 또 實施되기도 했지만⁹¹⁾ 貨幣 求得의 곤란과 防納 弊端의 發生으로 또 이어 民怨을 招來하였다.⁹²⁾ 그래서 肅宗 初期에는 貨幣流通을 爲한 金納化의 漸進의 展開를 爲해 贖木과 諸般 納木之類에 限해서만 錢文代捧을 試圖하게 되었고 收米之類는

今若通行外方 而民役中收米則依當初所定 不可許令代捧錢文⁹³⁾

이라 하여 錢納을 禁하였다. 이와 같은 措置의 背景에는 當時의 國民經濟가 自給自足 段階에서 商品流通經濟 段階으로 進入되지 못한을 意味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經濟秩序 下에서의 國家 財政은 그 存立의 必要性으로 인해 傳統的으로 主要한 米類의 稅入을 錢納으로 轉換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田稅則以惟正之供 難於變通 大同亦自該廳 防塞不許矣⁹⁴⁾

라고 한 바와 같이 田稅는 惟正之供으로서 錢文代捧으로 變通하기가 힘들고 大同米 역시 該廳에서 防塞·不許한다는 내용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國家의 基本 立場은 그 후에도 계속 闡明되었고 固守되었다. 다만 凶年을 當하여 稅米收捧이 至極히 어려울 때⁹⁵⁾ 그리고 勅使를 鑿應하기 위한 緊急 所要經費가 必要할 때⁹⁶⁾에는 間或 錢文代捧이 行해졌고, 稅米의 運輸가 대단히 不便한 海西 山郡地域에는 일찍부터 金納化가 進行되었다. 卽 新溪·谷山·瑞興·遂安의 米·田米·太와 鳳山의 太는 肅宗 39年(1713)에 作錢 收捧토록 定式化하였다.⁹⁷⁾

그런데 肅宗 23年(1677) 以後 貨幣 鑄造의 中斷과 流通圈의 擴大에 따른 錢貴現象이 提起, 深化되어가자 이제까지 現物 收捧이 固守되어 왔던 田稅가 收取上의 變化를 일으켰다. 즉

91) 宋贊植, 1975. 《李朝의 貨幣》

92) 《備邊司謄錄》34, 肅宗 4年 1月 24日條

93) 《同上書》35, 肅宗 5年 4月 9日條

94) 《同上書》37, 肅宗 12年 12月 15日條

95) 《同上書》53, 肅宗 29年 12月 5日條

96) 《同上書》53, 肅宗 29年 5月 21日條

97) 《萬機要覽》〈財用篇〉2. 山郡田稅作木布錢錄

國家貢賦之中田稅尤重 曾前或因賑資 或因軍需 大同則時或推移相換 而田稅則曾無轉換之事矣 近來事體漸垂 至於田稅 或自外方有作錢補賑之請 或自軍門有相換需用之事 其間弊端有不可盡述⁹⁸⁾

이라 한 것처럼 大同米 경우에는 賑資·軍需의 名目으로 간혹 轉換之事가 있었으나 田稅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는 補賑이란 이름으로 田稅의 錢文 收捧을 請하고, 軍門에서는 錢文으로 相換하여 需用하는 일까지 發生하게 되어 많은 弊端이 惹起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貨幣가 全國에 널리 普及되고 모든 去來에서의 그 比重이 커짐에 따라 提起된 必然的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英祖는 錢貴現象에서 비롯된 諸 弊端을 除去하고 나아가서는 稅納上에서의 貨幣 存在를 拂拭코자 戶曹가 매년 作錢 取用하는 평안도 田稅까지 轉換之事가 없도록 하였다.⁹⁹⁾

그러나 凶年과 運輸上의 不便으로 야기된 現物 上納의 어려움은 英祖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同 29年(1753)에는

當初折價則米一石 折錢五兩 田米折錢四兩一錢七分 乙丑因審理使陳達 一依詳定例 改折定以米一石 錢四兩五錢 田米一石 錢三兩五錢(中略) 戶曹判書趙榮國曰 然則以乙丑改折之價 仍爲定式作錢何如 上曰 依爲之¹⁰⁰⁾

라고 하여 황해도 長山以北 地域에 대한 田稅의 作田을 定式化하고 同 31年(1755)에는 嶺南의 五邑에 대해 作錢을 受諾케 하였다.¹⁰¹⁾ 이와같은 傾向은 正祖時에도 계속되어 海西의 長山以南 地域에 대한 大同米 作錢 收捧이 施行되었으¹⁰²⁾ 同16年(1792)에는 關東의 嶺西 五邑에 대한 田稅·大同米의 作錢 代納¹⁰³⁾이, 그리고 同 20年(1796)에는 開城 周邊 三邑이 別作錢되었다¹⁰⁴⁾

이처럼 稅米의 金納化 過程은 國家의 意圖인 現物收納 原則으로 말미암아 稅木(布)의 그것보다 不盡하였다. 그와같은 現象은 朝鮮 後期에 있어서 諸般 分野의 急激한 움직임과는 棼 對照的인 事實이라 하겠다.

98) 《備邊司謄錄》72, 肅宗 45年 11月 29日條

99) 《同上書》81, 英祖 3年 10月 8日條

100) 《同上書》125, 英祖 29年 1月 10日條

101) 《萬機要覽》〈財用篇〉2, 山郡田稅作木布錢條

102) 《同上書》〈財用篇〉3, 大同作貢 作木布錢條

103) 註 101, 102참조

104) 註 101참조

IV. 貨幣流通上에 나타난 諸現象

1. 錢賤現象

錢賤現象은 貨幣에 대한 需要에 비해 貨幣流通量이 相對的으로 많을 때 惹起되는 貨幣價値의 下落現象을 말한다.

肅宗 4年(1678) 民間 去來의 圓滑을 圖謀하고자 鑄造하기 시작한 貨幣는

令各衙門鑄成 今至千貫 雖似不足 繼鑄不掇 則自可通行 四月初一日爲始行之之意 亦已定奪爲白有等¹⁰⁵⁾

이라 한 바 처럼 千貫에 達하는 鑄造量을 보았으나 適切한 流通量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여 계속 鑄造하기로 하고 同年 四月一日을 期해 始行하기로 하였다. 이 때의 錢價는 大明律 內容과 開城에서 遵用되는 例規를 參酌하여 錢 400文의 價値를 銀 1兩으로 하였다. 그리고 米價는 豊凶에 따른 差異가 있어 一定한 等式을 마련할 순 없지만 당시 時價에 따라 錢 400文의 價値를 米 10斗로 定하기로 했다.¹⁰⁶⁾

그러나 이 때의 貨幣 名目價値가 素材價値보다 낮게 策定되었기 때문에

錢文價輕 鑄器價重 故銅鐵多歸於鑄器 以致所鑄之錢 或不免銷入鑄器之中 前頭廣布中外 永久通行 有不可必 誠爲可慮¹⁰⁷⁾

라 하여 鑄錢 原料인 銅·鐵 대부분이 鑄器를 製作하는데 들어가고 심지어는 鑄造된 錢文이 器物製作에 銷入되는 利食行爲가 發生되었다. 이 같은 現象은 貨幣의 中外 普及과 持續的인 通用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여 國家에서는 事後 對策을 마련치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國家에서는 錢 200文을 銀 1兩에 準하도록 새로운 措置를 取하였고 鑄器 使用도 15種으로 制限시켰다¹⁰⁸⁾ 그러나 銀價에 對한 錢價의 相對的 平價切上은

105) 《備邊司謄錄》34, 肅宗 4年 閏3月 24日條

106) 同上, 應行節目

就考大明律所定之直 參以松都即今行之規 每肆百文准銀一兩 四十文准銀一錢 四文准銀一分爲白乎矣 米價則自有豊凶高下之不同 難不可一定恒式 姑從即今市直 每四百文准米十斗

107) 《同上書》35, 肅宗 5年 2月 3日 司啓辭用錢變通事

108) 註 107참조

《同上書》35, 肅宗 5年 2月 19日, 持平 申所啓 臣得見鑄錢事目 則民間鑄器十五種外 並皆一切祭斷

改定其價 雖出於便宜輕重之道 而窺聞閭巷相傳之言 則新令未頒之前 豫知其幾者 多出銀貨 先爭鈎取 倍從其利 故諸衙門所鑄錢文 專歸於富厚之家 而市民多不與焉 競相怨謗云¹⁰⁹⁾

이라고 하여 新令이 公布되기도 전에 機密이 漏泄되어 諸 衙門에서 鑄造한 모든 貨幣가 富厚之家에 集積되는 現象이 發生하였다. 이 같은 錢價의 改定은 貨幣에 對한 不信을 助長하였고, 또 各 官廳의 徵稅·公私債의 收納도 모두 銀·布로 收捧하였기 때문에 持續的인 貨幣 通用에 對한 疑懼心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商去來 時에는 2錢을 더 加給해야 될 만큼¹¹⁰⁾ 貨幣 價値는 低下되기 始作하였다. 그래서 國家에서는 貨幣 不信에 따른 京中에서의 錢賤 現象을 打開하기 위해 貨幣 流通의 地方 擴大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한 努力의 一環으로 米類를 除外한 大同木·各種 身布의 錢文代捧을 試圖하였다.¹¹¹⁾

그러나 京中 外의 貨幣 流通圈 擴大 不盡과 錢價에 對한 不信이 高潮됨에 따라 錢賤現象은 더욱 深化되어 갔다. 이리하여

變法太數 雖非美事 勢多窒碍 民皆不便 則不可不急時變通 以順民情 依前以四十文行用 而此後不從法令者 當論以重律事 各別舉行¹¹²⁾

이라고 하여 錢價를 始定 錢價로 還元하여 錢 40文을 銀 1錢에 準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錢價에 對한 不信은 如前하였고 外方에서 鑄造된 貨幣가 그 地域서 流通되지 않고 京中에 集中됨에 따라 錢文 800文이 銀 1兩에 交換되는 極甚한 錢賤現象이 露程되었다. 그래서 國家에서는 이에 對한 對策으로 御營廳 所有의 木綿 數百同을 放出하여 市中 錢文을 回收하고 나아가서는 外方의 貨幣 鑄造를 금지시켰다.¹¹³⁾

그렇지만 中央 官衙의 財政 補用과 地方의 貨幣 流通을 目的으로 京·外의 貨幣 鑄造가 다시 금 行해짐에 따라

行錢之法 本爲便民 而到今錢文甚賤 銀一兩之直 至於二兩半 若此不已 則決無永久通行之路 誠極可慮 京外鑄錢 姑令一切停罷 以賑恤廳所管別隊營米數千石 從市直酌定 換買錢文 姑爲藏置 稍待錢貴 而還爲出用 似合歎散之道¹¹⁴⁾

라고 한 바 처럼 錢賤現象이 加熟化되어 銀 1兩의 價値가 2兩 半의 價値로 急騰하게 되었다. 이

109) 《同上書》35, 肅宗 5年 2月 19日條

110) 《同上書》35, 肅宗 5年 2月 20日 左參贊 吳挺緯所啓

頃者錢文價改定之後 通用不如當初之便利 自中買賣之際 私自加給二錢云

111) 《同上書》35, 肅宗 5年 4月 9日條

112) 《同上書》35, 肅宗 5年 9月 15日條

113) 《肅宗實錄》9, 肅宗 6年 2月癸亥條

114) 《備邊司謄錄》36, 肅宗 8年 3月 28日 領議政 金(壽恒)所啓

러한 錢價의 急落은 貨幣 流通의 前途를 어둡게 만들어 國家에서는 京外의 錢文 鑄造를 中斷시키려는 한편 賑恤廳 所管의 米 數千石을 發賣하여 市中 錢文을 選收케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貨幣 流通量의 調整을 통한 貨幣 安定 施策도 헛 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다. 卽

鑄錢行錢曾無事日定奪 啓下之事 故不但鑄成行貨之際多有弊端 民間亦不信其永久通行¹¹⁵⁾

이라고 한 바 처럼 鑄錢·行錢 事目도 없이 貨幣를 鑄造하고 通用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弊端을 誘發시켰고 巷間에서는 그 持續의인 流通을 不信하게 되었다. 特히 中央의 各衙門과 外方에서 鑄造된 貨幣는 重量 未達과 多量의 雜鐵 混入으로 인해 錢文의 無用之物 現象과 錢賤現象을 더욱 深化시켜 나갔다.¹¹⁶⁾ 設或 鑄錢事目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銅·鐵과 같은 鑄錢 原料가 不足하였기 때문에¹¹⁷⁾ 品質이 粗惡한 貨幣의 鑄造는 必然的이었는지도 몰랐다.

이처럼 貨幣價値의 安定을 위한 國家의 諸般 努力은 上述한 여러 要因들이 相互作用함으로써 별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같은 錢賤現象은 肅宗 23年(1677)에 全國의인 鑄錢 停止 施策¹¹⁸⁾에도 불구하고 繼續되었으니 이는

衙門鑄錢 皆已停止 而錢貨日賤 此實由於民間私鑄之致 京中亦有私鑄 而至於峽中 島中 其弊尤甚 甚至浮船海上 而盜鑄於船中 私鑄之甚多 實由於此云¹¹⁹⁾

이라고 한 것 처럼 民間 私鑄에 그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의 私鑄現象은 京中 뿐만 아니라 峽中·島中에서 심지어는 海上에 배를 띄어 놓고 船中에서 까지 盜鑄할 정도였다. 이러한 民間의 私鑄現象은 이미 肅宗 4年(1678) 貨幣 鑄造 以後¹²⁰⁾ 계속 발생된 것이었다. 私鑄는 사사로히 貨幣를 鑄造하여 名目價値와 素材價値의 差額을 노리는 違法行爲로서 그 差額의 利를 많이 獲得하려고 하기 때문에 銅錢의 品質·重量은 항상 粗雜·輕薄하기 마련이었다. 이로 인해 流通界에는 惡貨가 良貨를 驅逐하는 現象이 漫然되어 銀은 退藏되고 品質이 粗惡한 錢文만 流通되는 銀貴錢賤 現象이 발생하였다.¹²¹⁾

이러한 錢賤現象은 肅宗 34年(1708)에도 나타나는데

115) 《同上書》37, 肅宗 9年 1月 29日 左議政 閔(鼎重)啓言

116) 註 115참조

117) 《同上書》47, 肅宗 19年 7月 4日條

118) 《肅宗實錄》30, 肅宗 22年 8月 丙戌條 《同上書》31, 肅宗 23年 9月 壬辰條

119) 《備邊司曆錄》50, 肅宗 25年 5月 17日, 刑曹判書 金構所啓

120) 宋贊植, 1975. 《李朝의 貨幣》156~173

121) 註 119참조

近來錢賤 非如鑄器之利 雖許復通 似無私鑄之慮云¹²²⁾

이라 한 바 처럼 錢價가 下落하여 鑄器之利 만도 못하게 되었고 鑄錢 原料인 鑄物을 다시 通用한다 해도 私鑄의 緣려가 없을 程度로 되었다. 즉 素材價値와 名目價値가 비슷할 정도로 錢價가 暴落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錢賤現象도 貨幣 流通圈의 擴大와 稅納上에서의 貨幣 地位가 上昇함에 따라 점차 解消되기 시작했다. 換言하자면 肅宗 23年(1702) 以後 貨幣 鑄造의 中斷에 따른 貨幣 量의 限定은 漸增되는 貨幣 需要에 依해, 그것이 金納化에 依한 것이든, 貨幣 經濟의 成長에 基因한 것이든, 또는 兩者의 相補의 結合現象에 依하든지 간에 이제까지의 錢賤現象을 緩和시켜 갔고, 나아가서는 貨幣 流通量의 不足에 따른 錢價의 騰貴, 即 錢貴現象을 招來케 하였다.

2. 錢貴現象

錢貴(錢荒) 現象은 前述한 錢賤現象에 相反되는 概念으로서 貨幣에 대한 需要에 비해 貨幣 流通量이 相對的으로 不足할 때 發生되는 貨幣價値의 上昇 現象을 말한다.

이러한 現象은 肅宗 40年(1714) 以後 자주 나타나는데

我國則一番鑄錢而止 即今錢貨極貴 外方小民之窮困 日以益甚¹²³⁾

이라고 하여 肅宗 23年(1677) 以後 鑄錢 停止에 따른 貨幣의 稀貴現象으로 말미암아 外方 小民의 生活은 날로 窮乏해져 갔다. 이와같은 貨幣의 極貴는

錢貨行用既久 流布漸廣 而久不可鑄 則有限之物 日致耗縮 勢所然也 近來市肆之間 銀錢 幾乎相將 殆無貴賤輕重之別 若以錢爲有弊而停罷不用則己 若仍行用則必須加鑄 可資 用度¹²⁴⁾

이라 한 바 처럼 貨幣 使用이 오래되고 그 流通 範圍가 점차 擴大되는데도 그 需要를 充足시킬 만한 貨幣 供給도 없고 심지어는 貨幣 鑄造마저 中斷하여 發生된 것이다. 錢文 鑄造가 중단된 狀態下에서 이미 鑄造된 貨幣는 그 流通過程에서 나날이 耗縮되어 一般 去來上에서는 銀·錢 間의 貴賤, 輕重 區別이 없을 程度로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自前若當木花絕貴之歲 則各樣身布 或以錢代捧 而即今錢貨之絕貴 亦無異於木綿之難辦

122) 《備邊司謄錄》 59, 肅宗 34年 5月 15日, 左議政 李(濡)所啓

123) 《同上書》 67, 肅宗 40年 9月 29日 行戶曹判書 趙泰耆啓言

124) 《同上書》 69, 肅宗 42年 12月 25日條

蓋錢貨之造已久 窮海深峽 莫不通用 以此之故 場市間錢貨絕稀 傷農病民 莫基於此¹²⁵⁾

이라고 한 것 처럼 各種 身布의 錢文代捧 可能性마저 排除해 버렸다. 이러한 諸 事實은 위에서도 言及한 바 있는 貨幣 流通圈의 擴大, 即 行錢 以後 30여년 期間에 窮荒絕島에 이르기 까지 貨幣가 普及되고 그 使用이 日常化된 데 基因한 것이다.

그 후 英祖는 錢貴現象 克服을 爲한 鑄錢要請에 對해

賑應財物之竭乏 予豈不知 但鑄錢之弊甚多 凡諸奸僞之百出 皆由於錢 今雖不能厚民之俗 豈可以鑄錢 貽害於民俗乎 且錢者 非可食可衣者 而錢賤物貴之弊 隋國之古事可鑑也¹²⁶⁾

라고 하여 貨幣에 對한 排他的 立場을 取하였다. 即 鑄錢에 따른 弊害가 너무나 甚多하고 모든 奸僞之類는 貨幣로 부터 緣由되기 때문에 지금 民俗을 敦厚하게 못할 지라도 어찌 貨幣를 鑄造하여 民俗에 害毒을 끼칠 것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貨幣는 可히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것이고 錢賤物貴에 따른 弊端은 隋國의 例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英祖는 貨幣鑄造와 그 流通에 따른 諸弊端을 깊이 意識하여 신하들의 鑄錢 要請을 不許하였다.

그러나 貨幣 存在에 對한 排他的 立場을 取했던 英祖도 同7年(1731)에 八道 全域에 걸친 大凶荒에는 어쩔 道理가 없었다. 즉 國家 財政의 窮乏을 打開하고 백성들을 賑恤하며 貢人들에 對한 貢價支給을 爲해 戶曹와 賑恤廳으로 하여금 貨幣를 鑄造토록 한 것이다.¹²⁷⁾ 그렇지만 同年의 貨幣 鑄造는 深化된 錢貴現象을 克服하기에는 너무나 未洽하였고 그나마 供給되었던 貨幣는

似聞外邑戶首監色輩 以錢收捧於民間¹²⁸⁾

이라 한 바 처럼 外邑의 戶首·監色輩들의 手中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 같은 一時的 貨幣 鑄造와 外邑 奸吏의 농간에 따른 錢文 收捧은 英祖 11年(1735)부터 다시 錢貴現象을 惹起시켰다. 더욱이 京·외의 各 官衙所有 貨幣가

臣聞兵曹封不動木綿 六十餘同錢七十萬兩 統營別備與新鑄餘錢 合爲七萬餘兩 兩南監營賑恤庫錢 亦當爲十數萬兩 惠應與諸軍 則雖不能的知數交¹²⁹⁾

라고 한 바와 같이 그대로 倉庫에 死藏되어 있었고 貨幣를 鑄造했다 하더라도 그 것이 곧 貨幣의 供給·流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기에¹³⁰⁾ 錢貴現象은 더욱 깊어만 갔다.

125) 《同上書》70, 肅宗 43年 9月 2日 領議政 金昌集啓言

126) 《同上書》78, 英祖 1年 10月 20日 條

127) 《同上書》91, 英祖 8年 5月 13日 條

128) 《同上書》98, 英祖 11年 12月 13日 條

129) 《同上書》120, 英祖 25年 9月 20日, 內局提調 李宗城所啓

130) 《同上書》134, 英祖 34年 10月 6日

洪鳳漢曰 總廳鑄役 今已經年 臣於中間 待罪本廳 亦嘗旬管矣 所鑄既多 停役且久 不可不及今行錢 以祛目下錢荒之弊矣

이처럼 貨幣의 供給·流通量의 不足에 따른 錢貴現象은 正祖 時期에 들어와서도 그칠 줄 몰랐다. 계속적인 貨幣 退藏行爲와 錢價 騰貴에 따른 高利貸行爲는 賈人들의 資金難을 誘發시켰고¹³¹⁾ 나아가 國家財政 窮乏과 民生의 艱苦는 날이 갈수록 더욱 深化되어 갔다.¹³²⁾ 그래서 國家에서는 錢荒의 打開策으로

領議政徐曰 揀弊之策 臣亦猝難思得 而吏判每以爲各司朔下軍門奉足 皆以純錢上下 則庶可爲目下球急之道云 此既非大段變通 而以公以私 有益無損 爲先知委各衙門 量其留儲 多寡 限幾朔純錢上下之意 報備局施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¹³³⁾

라고 하여 各 衙門에서 支拂하는 軍門奉足의 朔布를 純錢으로 支出하여 目下の 錢乏現象을 克服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賈市人에 對한 救濟策도 마련하여 五營門의 保有 錢文中 15萬兩을 貸與하되 利息과 口錢을 받지 못하게 했다.¹³⁴⁾ 또한 同9年(1785)에는 貨幣를 鑄造하여 貨幣의 供給量을 倍加시키하고자 했다. 그러나 鑄造된 貨幣가 民間에 供給·流通되지 않게 됨에 따라 公·私의 用度는 다시 艱乏하게 되었다.¹³⁵⁾

이러한 近間의 事情에 關해 禹禎圭(1718~?)는

願今錢貴之弊非在乎他 一歲之中錢之出於民 而入於公者不可勝計 內而惠廳·均廳·各軍門之所捧 外而各營各鎮之所取 已過屢十萬緡 而京外之公用所散 歲不過十分之一二矣¹³⁶⁾

라고 하여 每年 백성들로 부터 國家機關에 들어가는 錢文, 即 中央에는 宣惠廳·均役廳·各軍門, 地方에는 各營·鎮의 所取가 數十萬 꾸러미가 되는데 그 所散은 不過 十分之一二에 지나지 않아 錢貴現象이 發生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現象이 英祖 代보다 正祖 代에 더욱 極甚했던 現由는

均廳及各軍門 或爲質米 多以官錢散於都民 故公私兩利 貨財通行矣 今則公下之外 不復有散錢之路 而一向徵出於民間 則錢安得不貴乎¹³⁷⁾

라 하여 英祖 時에는 均役廳과 各軍門에서 간혹 米穀을 마련하기 위해 民間에 多量의 貨幣가 供給되었지만 正祖 時에는 公的으로 나가는 것 外에는 散錢之路가 없고 오직 民間에서만 錢文

131) 《同上書》165; 正祖 6年 2月 5日

錢貨 既非水火耗失者 而近來京外 錢荒或甚 此專由於內而軍門 外而營邑 俱爲藏匿不敷之致 雖不如前過多 若量宜從略放債 則庶可爲一分救弊之道矣

132) 《同上書》163, 正祖 5年 12月 25日 京外徵債 雖有嚴防之朝禁 貨殖者舉皆富豪 假貸者多是貧殘

133) 《同上書》165, 正祖 6年 11月 7日條

134) 《正祖實錄》17, 正祖 8年 3月 甲辰條

135) 《備邊司謄錄》173, 正祖 12年 8月 18日條

136) 禹禎圭, 〈錢貨變通之議〉《經濟野言》

137) 同上

을 收捧하니 그와같은 現象이 더욱 深化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錢貴現象의 克服을 爲해 國家 保有 錢文을 貢市人에 散貨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¹³⁸⁾

한편 柳壽垣(1694~1755)은

內而財力衙門 外而營鎮等處 多蓄錢貨 錢積於公帑 不能不流 故錢貴¹³⁹⁾

라고 하여 禹禎圭의 見解와 같이 하고 있다. 即錢貴는 中央·地方 各 官衙의 盲目的인 貨幣 集積으로 말미암아 圓滑한 貨幣 流通이 阻害받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軍兵餉費 官吏俸資 國家市易 以錢派給 則錢入於公 而復散於民 此其推移出入之法 非有司莫能行也 軍門營鎮則不然 無此推移出入之路 只有封不動三字死法而已 其弊安得不至於錢荒乎 今若悉罷 私財之蓄 而歸之有司之臣 則出納有方 錢法自通¹⁴⁰⁾

이라고 하여 軍餉費·官吏俸資 그리고 國家 市易을 貨幣로 支給하면 국가에 들어온 錢文이 다시 民間에 還流되어 가히 錢荒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商業을 振興시켜 일부 富室에 積滯되어있는 死貨를 生貨로 轉換시키고 合理的인 鑄錢·行錢制度를 마련하여 貨幣의 持續的 流通을 期하자고 하였다.¹⁴¹⁾

이처럼 肅宗 40年(1714) 以後 流通界에 擡頭되기 시작한 錢貴現象은 國家와 富豪들의 끊임없는 退藏行爲로 인해 더욱 深化되었고 國家·國民經濟의 幅을 萎縮시켜갔다.

V. 結 語

以上에서 18世紀의 貨幣 流通에 關한 것을 살펴 보았다. 말하자면 貨幣 流通圈의 擴大過程과 背景, 金納化의 背景과 展開過程, 그리고 貨幣 流通上에 나타난 錢賤現象과 錢貴現象에 關해 頭緒없이 적어 보았다. 論理 展開上의 未熟과 叙述上의 반복을 克服하지 못한 채 拙者의 幼稚한 臆만 強調한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上記의 內容을 요약·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肅宗 4年(1678) 以前에는 開城과 隣近地方에서만 貨幣가 通用되고 있었다. 이같은 開城과 隣近地域의 活潑한 화폐 유통은 다른 지방에서의 流通 可能性을 提示하여 드디어 同4년에 貨幣를 鑄造케 하였다. 그러나 이 때 鑄造된 貨幣도 地方에 까지 擴大, 通用시킬 만큼 充分치 않아,

138) 同上

139) 柳壽垣, <論錢弊>《迂書》

140) 同上

141) 同上

사람의 왕래와 물자의 疏通이 편리한 일부 지역(安州, 全州)에 限해 貨幣를 鑄造케 하였다.

그리고 화폐 유통에 대한 國家의 公信力을 賦與하고자 三法司·義禁府의 贖木類와 賑恤廳의 還上에 대한 錢納를 서둘렀고 同5年(1679)에는 錢納의 門戶를 더욱 개방하여 米類를 제외한 大同木, 奴婢身貢, 各種 軍·身布를 錢文代捧토록 하였다. 그리고 貨幣를 必要로 하는 자는 수시로 上京하여 求得토록 하였고, 또 行錢差人을 各地에 派送하여 화폐의 漸次的인 流通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이들 差人은 國家에서 정한 交換價를 무시하고 任意로 錢價를 조정하여 謀利하는 弊端을 恣行했다. 그렇기 때문에 兩南地方에 화폐가 유통된 지 數年이 지났지만 實際 去來에 이용되지 못하는 實情이었다. 그래서 화폐 유통에 관한 業務를 監司, 守令에 專擔토록 하는 일련의 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화폐 유통에 대한 國家의 觀心을 나타내 주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 후 中央·地方의 財庫를 보충하기 위한 貨幣 鑄造와 凶年을 당하여 民願에 따른 現物·錢文間의 從願上納等은 화폐 유통의 확대와 圓滑한 貨幣通用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肅宗 40年(1714) 頃에는 韓半島 거의 全地域이 貨幣 流通圈으로 包容되었다. 이처럼 貨幣가 널리 유통됨에 따라 모든 物貨는 錢文을 통해서만 交易이 가능해졌고, 以前의 交換手段인 木·布·米·銀과 같은 것은 그 機能을 喪失하게 되었다.

한편, 화폐 유통과 더불어 錢賤·錢貴現象이 擡頭되었는데 前者는 肅宗 代에 限한 貨幣上의 문제로서 貨幣價値(交換價値)의 下落現象을 뜻한다. 이는 錢價의 不合理한 策定과 貨幣 不信, 유통지역의 狹小, 貨幣 供給·流通量의 과잉, 民間 私鑄 等に 基因하는 것으로 화폐 구조의 중단과 유통권의 확대로 漸次 打開되어 갔다.

그러나 韓半島 全地域이 貨幣 流通圈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錢貴(錢荒)現象이 招來되었는데, 이는 貨幣價値의 上昇을 말하는 것으로, 貨幣 需要量의 增加, 鑄錢 原料의 不足, 그리고 國家와 民間에서의 貨幣 退藏行爲 等に 기인한다. 肅宗 40年(1714)부터 나타난 이 單發的인 現象은 英祖 時代를 거쳐 正祖 時代에 더욱 加熱化되었다. 英祖 時代에는 활발한 質穀活動을 통한 貨幣의 支出로 錢乏現象을 다소 緩和시킬 수 있었지만 正祖 時代에는 그 같은 活動도 적었고 國家保有 貨幣量은 날로 증가되어 錢荒의 深度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요컨대 貨幣는 18世紀 初에 이르러 全國을 그 流通圈으로 包容하였고, 交換手段上의 獨占的地位를 확보하였다. 비록 物納과 錢納이 未分化된 狀態下에 있었지만 稅納上의 화폐 지위는 점차 上昇되어 1750년에 公布된 均役法의 施行을 可能케 하였다. 한편 貨幣 流通 初부터 발생한 錢賤現象은 화폐 통용의 初期的 現象으로서 貨幣 流通圈의 擴大와 密接한 關係를 맺었다. 이러한 限界性때문에 肅宗 23年(1697) 以後 화폐 구조의 중단으로 提起된 유통량의 限定은 점차적인 유통권의 확대에 따라 錢賤現象을 解消하고 나아가서는 錢乏現象을 초래케 하였다. 貨幣 需要量의 增加와 流通圈의 擴大에 따른 錢貴現象은 화폐 구조를 斷行토록 했지만 그 鑄造量이 곧

流通化되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의 傑有로 轉化되어 公的으로 支出되는 以外에는 계속 退藏되
기만 하였다. 그래서 錢貴現象은 克服되지 못한 經濟의 惡循環만이 조장된 것이다.

—Summary—

The Study of the Currency of the 18th Century

In-hyeog Kwon

It was not until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about 1725) that the "Sangpyung Tongbo", which began to appear again from the 4th year of King Sukjong, was circulated through out the nation.

Therefore, it became the only system of exchange.

Even though payment in goods and payment in coins coexisted, helped to the position of the coins was highly advanced and consolidated the nation's economy. This made "Gyunuk-Pop" operational in 1750.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of "Junchun" was an early phenomenon of money currency, and the enlargement of coin currency made it disappear. So the "Jungui" phenomenon, which was the result of increasing demand quantity, and of the expansion of the currency sphere, gradually declined because of the increase of coin quantity. In conclusion money currency was in a great confusion in the 18th century, reflecting the inadequate currency system of the nation.